

특례편입학 규정

제정 2020. 07.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학칙」(기획예산팀-83, 2020.02.07.)(이하 “개정학칙”이라 한다) 부칙 제3항(개정 2020.07.15.)의 규정에 따라 상지영서대학교 학생이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특례편입학하는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편입학”이란 개정학칙 부칙 제3항의 편입학을 말한다.
2. “특례편입생”이란 개정학칙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지정학과”란 상지영서대학교 동일·유사학과로 인정되어 특례편입학이 가능한 본교의 학과(부)·전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개정학칙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이나 상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다른 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례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특례편입학에 관한 중요 사항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례편입학 전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례편입학 모집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 및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례편입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정원 및 자격) ① 본교 특례편입학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특례편입생은 지정학과로 지원할 경우 전원 수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학과별 선발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다.

③ 상지영서대학교 제적생 또는 졸업생은 특례편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절차) 특례편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특례편입학 원서, 상지영서대학교 자퇴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형 및 선발방법) ① 특례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특례편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시행한다.

③ 특례편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최종 합격자로 처리한다.

④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편입학이 취소된다.

제9조(학점인정) ①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취득한 학기 및 학점은 인정한다. 다만, 상지영서대학교에서 4학기(2년제) 또는 6학기(3년제) 이상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하지 못한 경우 취득 학점은 모두 인정되나 이수학기는 3학기(2년제) 또는 5학기(3년제)만 인정한다.

② 상지영서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재이수, 재수강, 이수학점 포기는 할 수 없다.

제10조(등록금) 특례편입생은 본교에서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지영서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상지영서대학교와 본교의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본교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라 특례편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팀-470, 2020.07.23.)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